

안전검사 신청서
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수시검사: 15일 정기검사·정밀안전검사: 검사주기 도래 일 전·후 30일
------	-----	--

신청인	건물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사무소 전화번호/팩스번호
	승강기 소재지	
	안전검사의 종류 [] 정기검사 [] 수시검사 [] 정밀안전검사	

안전 검사 대상 승강기	승강기의 종류		운행 층수	수량	제 조 · 수 입 업체명	유지관리업체		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	검사 희망일
	구조	용도				업체명	등록번호		
			층	총 대					
			층	총 대					
			층	총 대					
			층	총 대			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2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[]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, 지정검사기관의 장

귀하

[] 행정안전부장관

붙임서류 (수시검사 신청 시)	1. 승강기의 종류, 제어방식, 정격속도,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동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도서 3.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건축사항 관련 서류(변경허가서, 건축도면,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)	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
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처리기간 란의 처리기간까지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. 다만,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이 지나 신청한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.
- 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작성란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 확인 (수시검사)	→	승인 (수시검사)	→	안전검사	→	결재	→	결과 통보
신청인		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		공단		공단		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		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		